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추가(안 제42조제2항)

가. 개정 이유

-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를 추가(안 제42조제2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특화사업자가 활용가능한 규제특례가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